

제도도입 과정 한눈에 보기

🏠 제도도입 운영하기 > 제도도입 과정 한눈에 보기

STEP 01. 도입 준비

제도의 이해·공감대 형성 >	퇴직연금 도입 협의체 구성 >	추진계획 수립 >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컨설팅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STEP 02. 제도신청

사업장 현황 분석 >	퇴직연금 제도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금제도 운용현황(누진제, 외부 적립 여부 등) ②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③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④ 재무 상황, 부채비율 등 사업장 현황 분석 	<p>제도 선정시 고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무적 측면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 부채의 축소 ② 인사적 측면 :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 ③ 노사관계 측면 : 근로자의 선호도, 위협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STEP 03. 제도 설계

퇴직연금 규약 작성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규약 동의 및 신고 >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 규정 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합의로 선택합니다.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DB형 제도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 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자 계약 시 간사기관 지정 필요)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STEP 04. 제도 도입 및 운영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체결 및 운영 >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제도운영 과정 한눈에 보기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운용관리기관**: 퇴직연금제도의 기록관리를 책임지며,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영방법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자산관리기관**: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보관하며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을 사고파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운용방법의 종류

증권	채권 : 국채, 지방채, 국내외(OECD 가입국) 채권 주식 : 국내외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 국내외 투자회사 주식 수익증권(펀드) : 국내외 자사운용사 발행 수익증권 기타 : 기업어음(CP),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연계증권 (원금보장형 ELS)
예금·적금	확정금리형 종류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보험계약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보험
기타운영방법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RP)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헤지 목적) 발행어음, 표지어음

확정급여형(DB) 재정검증	확정급여형(DC) 지면이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퇴직급여의 지급 (중간정산·종도인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	----------------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일정금액(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책임준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인원,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퇴직급여 예상액(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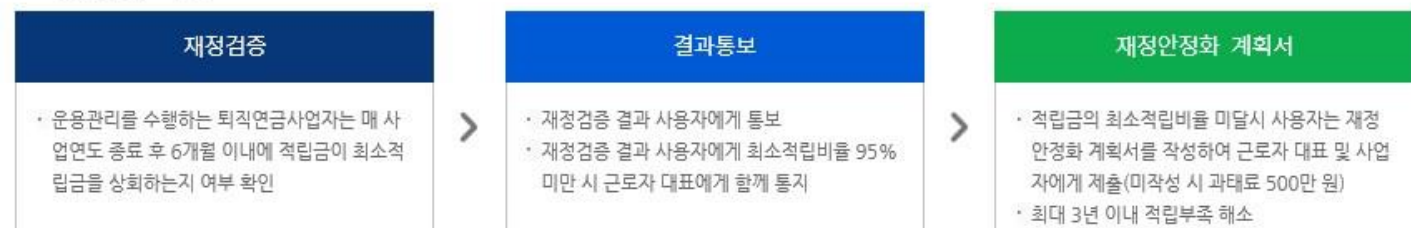
-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서, DB형을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을 위해 연금계리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①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 ② (비계속기준) 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확정급여형(DB)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연도	'12년~'13년	'14년~'15년	'16년~'17년	'18.1.1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고용노동부령에 따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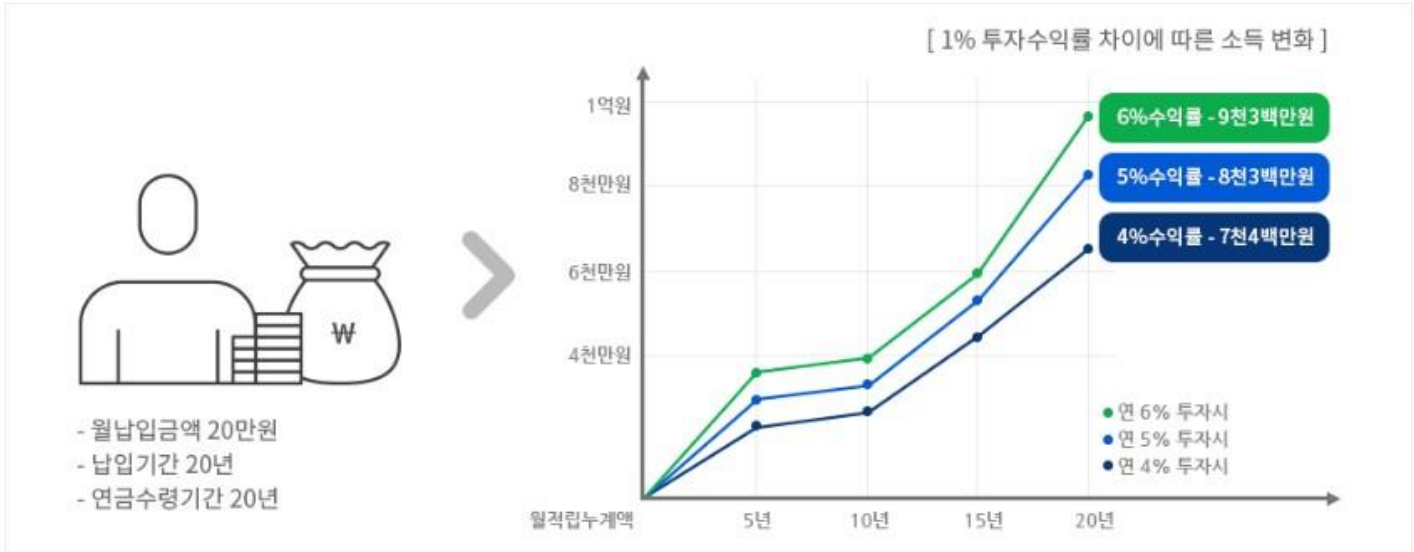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정검증 과정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 >	위험자산 투자한도 >	퇴직연금 투자원칙 >
----------------	-------------	-------------

▶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연금자산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자산운용 전에 운용 목적과 투자기간 등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목적 : 노후자금	투자목적 : 장기투자	투자목적 : 적립식투자
노후의 필수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입니다.	은퇴 혹은 퇴직 시까지 장기간 투자하게 됩니다.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므로 적립식투자 형태가 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안정성	수익성
퇴직연금은 소중한 노후생활 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거두어야 합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노후자금이 늘어납니다.